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50
----------	------

2020년 9월 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8.12. 김정태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8.21.
- 다. 상정 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9월 9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운영을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 정리하고, 의회의 학술연구용역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이 의회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활동을 권장하며, 연구용역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 의회의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 의장이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연구용역 과제의 제안 및 선정, 공모, 평가위원회, 관리, 평가 등 제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이하 “연구용역 조례”)에 따라 기존에 운용하던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의원정책개발비¹⁾(1인당 500만원)와 구분해 관리·운영하고자 그 추진방법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이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계획 수립	(제4조) 정책위원장	(안 제5조) 의장
과제제안	(제6조) 의원 및 의회사무처	(안 제7조) 의회사무처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과제선정	(제8조) · 상임위원장(위원의견) · 정책위원장(사무처장의견)	(안 제8조) 운영위원장(사무처장의견)
결과 평가	(제12조) 정책위원장(시행세칙)	(안 제12조) 정책위원장(의장방침)

2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의원정책개발비 비교 및 개정안의 타당성

- 「연구용역 조례」에 따른 기존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의회비 항목이

1) 의회비(205) 항목 중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금년에 신설되었음. 다만,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가능하고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함.

아닌 의회사무처 내 별도 자율사업 예산²⁾으로 '9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의회비 비목 내 의원정책개발비와는 그 편성근거와 성격, 운영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자를 구별해 관리·운영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됨(표-2).

<표-2>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의원정책개발비 비교표

구 분	입법정책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념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경비 성격	지방자치단체 자율예산(207)	법정 경비(205)
과제 제안	의원 및 의회사무처	의원 연구단체
과제 선정	상임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과제 관리	상임위원회 및 입법담당관	의원 연구단체

3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향상, 연구 활동 권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2) '9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본청 '연구개발비(207)' 비목 내 '연구용역비' 로 편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예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름.

- 이는 입법정책의 추진목적과는 달리 의회 구성원인 의원이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38조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4)에도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을 ‘의회사무처’로 한정하기 보다는 안 제1조와 같이 의원을 포함한 ‘의회’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4 연구용역 과제 제안(안 제6조)

-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해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연구용역 조례」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의원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처는 정책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통합·조정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제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은 타당함.
- 다만, 안 제7조에 따르면 연구용역 과제 선정은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이하 ‘사무분장규칙’) 제7조에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

- 3)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용역에 관한 사항'은 입법담당관의 사무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제 제안을 받는 주체와 과제 선정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연구용역 과제 선정(안 제7조)

-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연구용역 과제는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①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②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③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장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장이 선정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현행 「연구용역 조례」는 제안자가 의원인 경우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장이 선정하고, 의회사무처 각 부서인 경우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책위원장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장이 선정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제 선정의 통합성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6 연구용역의 관리(안 제10조)

- 연구용역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입법담당관이 ①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②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③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등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해 안 제2조제2호는 ‘관리’라는 용어에 대해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분장규칙」 제7조에 따라 입법담당관을 관리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도 연구용역 관리주체로 포함되는 등 문리적 해석상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중 착수·중간·최종 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연구결과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7 기타사항(안 제5조, 제8조 및 제9조)

- 안 제5조, 제8조 및 제9조 등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명확성과 법적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3〉 기타 체계·자구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생략)</p> <p>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p> <p>③~④ (생략)</p>	<p>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원안과 같음)</p> <p>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p> <p>③~④ (원안과 같음)</p>
<p>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입찰로 공모한다.</p>	<p>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입찰로 공모한다.</p>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생략)</p>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원안과 같음)</p>

8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연구용역 조례」에 따른 기존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금년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별도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존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추진방법, 절차 등을 변경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장의 책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제출,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리·방법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연구용역 과제 제안을 받는 주체와 관리 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의 오류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골자

- 연구용역 과제 제출처를 입법담당관으로 함.
- 연구용역 관리 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의 오류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함.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별첨 참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50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9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연구용역 과제 제안을 받는 주체와 관리 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수정의 주요내용

- 연구용역 과제 제출처를 입법담당관으로 함(안 제6조).
- 연구용역 관리 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의 오류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조치 : 원안과 같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회사무처”를 각각 “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홈페이지”를 “의회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입찰로 공모한다.”를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을 “관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관”을 “과제별 소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u>의회사무처</u>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은 <u>의회사무처</u>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3조(책무) ① ----- ----- <u>의</u> <u>회</u>----- ----- -----.</p> <p>② ----- <u>의회</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생략)</p> <p>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u>홈페이지</u>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p> <p>③·④ (생략)</p>	<p>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의회 홈페이지</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u>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u>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p>	<p>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 ----- ----- -- <u>입법담당관</u>----- -----</p>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장이 선정한다.

1. ~ 3. (생략)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입찰로 공모한다.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③ (생략)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단서 신설>

-----.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

-----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

----- 의회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

----- 관리는 -----

-----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

1. ~ 3. (생략)

②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과제별 소관 -----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정책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활용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물과 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으로 본다.